

「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11호

「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과 신변 위협 등 복합적인 위험을 초래하므로, 피해자 지원시설의 접근성과 법적 보호를 고려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보안성과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, 피해자의 정보 보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

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, 해당 지원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,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